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9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박 정 · 이재관
한민수 · 허 영 · 어기구
김영배 · 김병주 · 박균택
최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상자료의 수집·제공, 예보 및 민간개방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기상청의 업무는 주로 기상관측 및 예보 중심으로 규정되었습니다.

그러나 기후위기 속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최근 들어 기상정보의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기상 관측과 예측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상정보,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정보 및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, 통합관리, 활용 촉진, 서비스 기반 마련 등과 관련된 조항은 부재한 실정입니다.

이에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,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

마련하고,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·통계·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등).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“기상기후데이터”란 기상정보시스템이나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·생산·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.

제4장에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3(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)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, 제공, 보존 등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대외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.

제12조의4(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·운영)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·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기상기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(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, 속성, 특성,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)의 체계적인 관리
2. 기상기후데이터 품질, 통계 및 제공 기술의 개발·관리·활용 등
3.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·활용 등을 통한 공공정책 수립, 의사 결정 지원 등
4. 그 밖에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대학 및 해외기관 등에서 구축·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5(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)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, 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

할 수 있다.

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1조제2항 중 “제36조의2제3항”을 “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36조의2제3항”으로, “기상정보를”을 “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대외 공표하거나 기상정보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4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“기상기후데이터”란 기상정보시스템이나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·생산·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. <u>제12조의3(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)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, 제공, 보존 등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</u> <u>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데</u>
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대외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.

제12조의4(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·운영)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·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기상기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(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, 속성, 특성,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

<신 설>

말한다)의 체계적인 관리

2. 기상기후데이터 품질, 통계
및 제공 기술의 개발·관리·
활용 등

3.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·활
용 등을 통한 공공정책 수립,
의사 결정 지원 등

4. 그 밖에 기상기후데이터 서
비스 플랫폼 구축·운영에 필
요한 사항

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
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
을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
대학 및 해외기관 등에서 구축
·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
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
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
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5(기상기후데이터 활용
실태조사) ① 기상청장은 기상
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
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
후데이터의 공공, 민간 활용 현
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
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
다.

	② <u>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③ <u>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51조(과태료) ① (생략) ② <u>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③ (생략)	제51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36조의2제3항-----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대외 공표하거나 기상정보를-----</u>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